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
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김영호 (통일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반영하여 ‘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’의 구성 기관에 해양수산부를 추가하며, 대통령비서실을 국가안보실로 명칭을 변경함.

또한, 지역적응센터의 지정·운영과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북한이탈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거주지에 서의 신변보호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9947호, 2024.1.9. 공포, 2024.7.10. 시행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협의회 구성 변경(안 제2조)

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반영하여 ‘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’의 구성 기관에 해양수산부를 추가하며, 대통령비서실을 국가안보실로 명칭을 변경함.

나. 지역적응센터의 지정·취소 및 관련 절차, 지역적응센터가 무상으로

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0조의2 내지 5 신설)
지역적응센터의 지정과 취소의 요건 및 절차, 기타 운영 등에 필요한
사항을 정하고, 지역적응센터가 통일플러스센터 시설을 무상으로 사
용할 수 있도록 함.

다. 통합문화센터의 설립·운영 등(안 제30조의6 신설)

남북통합문화센터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남북
통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기
위한 필요한 선정기준 및 센터의 운영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
장관이 정하도록 함.

라.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(안 제42조3항, 안 제42조6항 및 7항 신설)

북한이탈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신변보호 기간을 연장 또는 재연장
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을 정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기획재정부·교육부·외교부·통일부·법무부·국방부·행정안전부·문화체육관광부·농림축산식품부·산업통상자원부·보건복지부·고용노동부·여성가족부·국토교통부·중소벤처기업부·대통령비서실·국가정보원·국무조정실·경찰청”을 “기획재정부·교육부·외교부·통일부·법무부·국방부·행정안전부·문화체육관광부·농림축산식품부·산업통상자원부·보건복지부·고용노동부·여성가족부·국토교통부·해양수산부·중소벤처기업부·국가안보실·국가정보원·국무조정실·경찰청”으로 한다.

제30조의2제1항 중 “기관·단체·시설을”을 “기관 또는 단체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적응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필요한 자격, 시설을 갖추고 통일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통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통해 제2항에 따라 지역적응센터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가 법 제15조의2제2항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지역적응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

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적응센터로 지정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와 법 제15조의2 제2항의 위탁 업무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⑤ 지역적응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, 지역적응센터는 유효기간 만료일 9개월 전부터 6개월 전까지 별표1의 지정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⑥ 통일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및 유효기간 동안의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제30조의3부터 제30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0조의3(지역적응센터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) 법 제1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통일플러스센터를 말한다.

제30조의4(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취소)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지역적응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해당 지역적응센터에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.

1. 지역적응센터로 지정된 이후 영 별표1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2.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3.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
4. 지역적응센터가 통일부장관의 운영실태 개선 조치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
② 통일부장관은 지역적응센터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.

제30조의5(지역적응센터 운영 등) ① 통일부장관은 지역적응센터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30조제5항에 따른 위탁 여부 등에 활용할 수 있다.

② 통일부장관은 지역적응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매뉴얼을 마련하여 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.

③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적응센터의 지정, 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.

제30조의6(통합문화센터의 설립·운영 등) ①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남북통합문화센터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

남북 문화통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북한이탈주민과 일반주민의 통합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도서관·전시관 등 시설운영 사업
2. 북한이탈주민 문화활동 종합지원 사업
3. 북한이탈주민 심리·언어지원 사업
4.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과 일반주민의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

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민간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, 기관·단체 선정기준 및 센터의 운영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.

제42조제4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전단 중 “법 제22조의2제3항”을 “법 제22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”로 하며, 같은 항 중 “국방부장관이나”를 각각 “국방부장관, 국가정보원장 및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법 제22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의해 신변보호를 요청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통일부장관은 소재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신변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외교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기록 등에 대한

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.

⑥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단서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신변보호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전에 서면으로 확인해야하며, 요청서를 제출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.

⑦ 법 제22조의2제4항 및 제5항 단서에 따른 신변보호 연장 및 재연장, 재실시 기간은 5년의 범위내에서 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협회의의 구성) 법 제6조제 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회의(이하 “협 회”라 한다)의 위원(이하 “위 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	제2조(협회의의 구성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<u>기획재정부 · 교육부 · 외교부</u> <u>· 통일부 · 법무부 · 국방부 ·</u> <u>행정안전부 · 문화체육관광부</u> <u>· 농림축산식품부 · 산업통상</u> <u>자원부 · 보건복지부 · 고용노</u> <u>동부 · 여성가족부 · 국토교통</u> <u>부 · 중소벤처기업부 · 대통령</u> <u>비서실 · 국가정보원 · 국무조</u> <u>정실 · 경찰청</u> 및 국군방첩사 령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 람 각 1명	1. <u>기획재정부 · 교육부 · 외교부</u> <u>· 통일부 · 법무부 · 국방부 ·</u> <u>행정안전부 · 문화체육관광부</u> <u>· 농림축산식품부 · 산업통상</u> <u>자원부 · 보건복지부 · 고용노</u> <u>동부 · 여성가족부 · 국토교통</u> <u>부 · 해양수산부 · 중소벤처기</u> <u>업부 · 국가안보실 · 국가정보</u> <u>원 · 국무조정실 · 경찰청</u> --- ----- ----- ----- -----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제30조의2(지역적응센터의 지정 등)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 의2제1항에 따라 별표 1의 지정	제30조의2(지역적응센터의 지정 등) ① ----- -----

기준을 충족하는 기관·단체·시설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(이하 “지역적응센터”라 한다)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30조제5항에 따른 위탁 여부 등에 활용할 수 있다.

③ 통일부장관은 지역적응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매뉴얼을 마련하여 지역적응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적응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<신 설>

----- 기관 또는 단체
를 -----

--.

②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적응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필요한 자격, 시설을 갖추고 통일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통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통해 제2항에 따라 지역적응센터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가 법 제15조의2제2항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지역적응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

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적응센터로 지정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와 법 제15조의2제2항의 위탁 업무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⑤ 지역적응센터 지정의 유효기

<신 설>

간은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
으로 하며, 지역적응센터는 유
효기간 만료일 9개월 전부터 6
개월 전까지 별표1의 지정 기준
에 부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
료를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재
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⑥ 통일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
재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
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고
있는지 여부 및 유효기간 동안
의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결과
등을 반영하여 재지정 여부를
결정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30조의3(지역적응센터가 무상
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) 법
제1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남북관계
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
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
기 위하여 설치된 통일플러스센
터를 말한다.

<신 설>

제30조의4(지역적응센터의 지정
취소)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5
조의2제5항에 따라 지역적응센
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
<신 설>

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해당 지역적응센터에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.

1. 지역적응센터로 지정된 이후 영 별표1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2.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
3.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

4. 지역적응센터가 통일부장관의 운영실태 개선 조치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
② 통일부장관은 지역적응센터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.

제30조의5(지역적응센터 운영 등)

① 통일부장관은 지역적응센터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

<신 설>

과를 제30조제5항에 따른 위탁
여부 등에 활용할 수 있다.

② 통일부장관은 지역적응센터
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
매뉴얼을 마련하여 센터에 제공
할 수 있다.

③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
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적응
센터의 지정, 취소 및 운영 등에
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
한다.

제30조의6(통합문화센터의 설립

· 운영 등) ① 법 제15조의3제1

항에 따른 남북통합문화센터는
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이
해를 높이고 남북 문화통합에
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
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북한이탈주민과 일반주민의
통합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
도서관·전시관 등 시설운영
사업

2. 북한이탈주민 문화활동 종합
지원 사업

3. 북한이탈주민 심리·언어지
원 사업

제42조(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)

① · ② (생략)

<신설>

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의사 확인을 위해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한다.

④ 법 제2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소재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신변보

4.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과 일반주민의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

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민간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, 기관 · 단체 선정기준 및 센터의 운영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.

제42조(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)

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법 제22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의해 신변보호를 요청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----- 법 제22조의2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-----
----- 국방부장관, 국가정보원장 및 -----

----- 국방부장관, 국가정보원장 및 -----.

<삭제>

호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.

⑤ 법 제2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신변보호기간의 연장은 연장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⑤ 통일부장관은 소재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신변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외교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기록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.

⑥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의2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단서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신변보호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확인해야하며, 요청서를 제출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.

⑦ 법 제22조의2제4항 및 제5항 단서에 따른 신변보호 연장 및 재연장, 재 실시 기간은 5년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통일부 정착지원과	
연 락 처	(02) 2100 - 5922